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29일, 장종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장종태 의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 건강 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재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나,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

계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보다 용이해져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각각의 법률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중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